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현 찬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하여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필요 사항을 마련(기존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」에서 이관)하고, 가지조문을 정비하는 등 근거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방법을 신설하였고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을 신설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현 찬 위원장님과 서울시의 시세가 근거 법령 체계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